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6000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600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204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 선고 2018. 2.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20428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8. 체결된 288,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당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제1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은 이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원고가'를 '피고 회사가'로, 제4쪽 제8행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약정'으로, 제5쪽 제12행의 'H로'를 'J으로'로, 제8쪽 제6행의 '280,000,000원'을 '288,000,000원'으로, 제9쪽 제4행의 '위 돈을'을 '이 돈을'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1행의 '16호증'을 '16, 18호증'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2010. 12. 13.'을 '2011. 11. 14.'로 각 고치면서 같은 쪽 제13, 14행의 '약 15차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8행의 '2009. 9. 18.'을 '2009. 8. 19.'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행의 '대여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에 바로 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D의 송금액은 F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뿐이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0쪽 제14행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를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로 고치고, 같은 쪽 제20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을 삭제한다.

5)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 제11쪽 제10행의 '구하는'을 '당심에서 확장하는'으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2016. 3. 17.까지의'부터 '이를'까지를 '위 금전증여계약 전부를'로, 같은 쪽 제12행의 '273,246,700원'을 '288,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있다'에 바로 이어서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면서 위 금전증여계약 전부의 취소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상당액 중에서 위 288,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위 구상금채권 상당액은 330,672,111원{= 273,246,700원 + 20,383,027원(172,617,288원 × 연 10% × 2016. 3. 18.부터 2017. 5. 22.까지의 43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9,369,863원(100,000,000원 × 연 10% × 2016. 6. 15.부터 2017. 5. 22.까지의 342일 ÷ 365일) + 27,672,521원(272,617,288원 × 연 15% × 2017. 5. 23.부터 2018. 1. 24.까지의 247일 ÷ 365일), 위 각각의 계산 인자에 관하여는 앞서의 제2항 기재 참조)으로서 위 288,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있다.』

6) 제1심 판결 제11쪽 제13행의 '지연손해금을'을 '법정이자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제1이체행위를 포함한 제1심 공동피고 B, D의 순차 이체행위를 통하거나 이 사건 제2이체행위를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가 2015. 12. 28. 자신의 유일한 재산1)인 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3, 9, 15, 16, 18호증이나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위 돈 가운데 150,000,000원(= D이 2009. 8. 19.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30,000,000원 + L가 2015. 11. 17.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 상당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B이 이들에게 변제한 다음 피고가 D으로부터 새롭게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나. 5), 6)항에서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송석봉

판사최은정

1) 이와 달리 위 288,000,000원 가운데 아래에서 보는 D의 대여금 130,000,000원 상당은 피고의 단독 재산 또는 제1심 공동피고 B과의 공유 재산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